
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4일”을 “2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절차의 추후 보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절차의 추후 보완)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<u>14일</u>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. 다만,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	<p>제19조(절차의 추후 보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2개월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